

# 독일과 오스트리아 농민재해보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2020년부터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어 총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은 2009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18년에는 0.27%에 불과할 전망이다. 15~64세 인구의 증가율은 더욱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2017년경부터는 절대인구 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생산인구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산업의 생산력 저하와 국가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생애주기 동안 질병 및 재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 및 보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의 유지·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건강한 인적자원, 건강한 노동력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산업재해·직업병 예방,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어린이 학생시설부터 성인근로자, 그리고 노령농민에 이르기까지 생애건강예방 등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체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이 처음 도입·시행된 1964년에는 광업과 제조업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며, 당시 적용 사업장은 64개소에 피보험근로자는 81,798명이었다. 다음해인 1965년에는 적용대상 업종에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추가하였으며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도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적용대상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업종의 근로자 1인 이상의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임의가입을 허용하였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운송업에 한하여 임의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2008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유사자영업자)에 대한 특례가입이 허용되었다.

2007년 말 현재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수는 1,429,885개소이며, 피보험자는 12,528,879명이다. 적용제외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 가사서비스업,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이다(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2007년 총인구는 48,456천 명이며, 이 중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39,170천 명(80.8%)이다. 이들 생산가능인구(39,170천 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61.7%(24,166천 명)이며, 취업자는 23,433천 명(고용률 59.8%)이다. 이들 취업자 23,433천 명 중 서비스업 66.7%(15,434천 명), 제조업 17.6%(4,119천 명), 건설업 7.9%(1,850천 명), 농림어업 7.4%(1,726천 명)이다.

2007년 산재보험 피보험자는 12,528,879명으로 산재보험적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39,170천 명)의 29.8%, 취업자(23,433천 명)의 49.9%로,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과 자영농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07년도 농업·임업·어업의 취업자 수는 1,726천 명인데, 이 중 6.7%(115,023명)만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93.3%(1,611천 명)는 적용제외되고 있다. 한편, 2007년도 농가인구는 3,274,091명이며, 농가 수는 1,231,009가구로 1가구당 농가인구 수는 2.66명이다. 이들 농가인구(자영농) 및 가족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제외되고 있다. 2007년도 어업인구 202천 명 중 어업종사자는 60.9%(123천 명)이다. 이들 어업종사자(자영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제외되고 있다.

2007년도 농업부문의 산재보험은 3,818개 사업장에 적용되며 피보험 근로자는 34,528명이다. 이중 산업재해자는 444명이며, 산업재해 천인율은 12.86으로 전산업 평균(7.20)보다 높으며(1.8배), 산업재해사망 천인율은 0.23으로 전산업 평균(2.19)보다 높다(1.2배)(노동부, 『산업재해현황

분석』 2007).

농업인 안전공제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감염 등 질병 원인을 제외한 농작업 사망재해 636명 중 외상이 55.3%(352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운수사고 33.2%로 보고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조사(2006)에 의하면 농업인의 유병률(농부증: 37.0%)이 도시인의 유병률(17.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독일은 세계적으로 농업인 사회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시행되었다. 즉 1886년 5월 5일 “농림업 기업의 피용인을 위한 재해보험과 의료보험에 관한 법(Gesetz betrifft in die Unfall- und Krankenversicherung der in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n Betrieben beschäftigten Personen)”의 제정을 통해서이다. 1888년과 1889년에는 지역으로 분할된 48개의 농업인 재해보험조합(LBGen)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농업인 재해보험의 피보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13년에는 1,700만 명에까지 이르렀다.

재해예방을 위해 1900년에 재해보험안전보건기술감독관(Technische Aufsichtsbeamte: TAB)의 지도·감독을 산재보험조합들이 의무화할 것을 법상에 명시하였다. 또한 1911년에는 효과적인 재해방지를 위해 재해예방규정(UVV: Unfallverhütungsvorschriften)을 공포할 것을 농업인재해보험조합에 법적으로 위임하고 의무화하였다. 1925년에는 직업병과 통근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재해보험에 신설하였다.

지난 20세기 후반 30년 동안 피용인 이외에도 농장주와 배우자 및 가족종사자 또한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초기에 농림업 기업에 종사하는 피용인만을 대상으로 고안되었던 법적 의무보험으로서 농업인 재해보험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지닌 소규모 영세 농장의 가족에게까지 확대된 것이다.

2007년도 농민재해보험 가입 농업기업은 163만여 개소이며, 피보험자는 400만여 명이다. 같은 연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자는 96,083명, 통근재해자는 2,624명, 직업병유소견자는 3,270 명이다. 또한 신규장해연금수급자는 4,440명이며, 이중 업무상재해자가 4,144명, 통근재해자가 113명, 직업병유소견자가 183명이다. 2007년까지 누적된 연금수급자는 총 146,410명이며, 이중 피보험자 연금 수급자가 133,940명, 미망인연금 수급자가 10,785명, 고아연금 수급자가 1,675명 이다.

오스트리아 산재보험은 1887년에 도입되었으며, 농업인에게는 1929년부터 적용되었다. 이 농민

재해보험(LAVG-1929)은 1929년에는 일정지역(Wien, Niederösterreich, Burgenland)에 우선 적용되었으며, 1939년에는 오스트리아 전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오스트리아 농민재해보험은 ‘기업보험’으로서 보험료가 기업별로, 즉 경영인에 의해 한 번만 징수된다. 기업별 보험료 납부를 통해 작업장의 고용인뿐만 아니라 경영인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임시 고용된 가족종사자들까지 농민재해보험에 의해 보호된다. 또한 복수의 직업을 동시에 갖는 자는 각각의 직업으로 따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업이 농업 자영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직장에 고용되어 있는 자, 혹은 부업이 사냥 임차업이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농업 이외의 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자영인으로서 혹은 사냥 임차인으로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상 독일과 오스트리아 농민재해보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국가에는 자영농민의 농작업 재해에 대하여 사회보험인 재해보험(산재보험)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농업 자영인에 대한 사회보험(산재보험) 보호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독일과 오스트리아 농민재해보험 사례를 우리 현실에 부합되게 응용한 농민재해보험제도 도입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KLI**